

KINU 통일나침반 15-03



# 북한인권정책 추진전략과 실천과제

2015. 06.



KINU 통일나침반 15-03

# 북한인권정책 추진전략과 실천과제

한동호(북한인권연구센터 부연구위원)

도경옥(북한인권연구센터 부연구위원)

2015. 06.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 Contents

〈요 약〉 .....	1
I. 서론 .....	3
II. 국제협력과 남북관계 발전 조화 .....	5
1. UN 북한인권사무소 설치 및 활동 지원 .....	5
2. 남북한 교류협력 적극 추진 .....	8
3. 북한이 수용가능한 인도적 사안 발굴 .....	10
III. 실행가능한 인권정책 .....	13
1. 다각적 외교활동을 통한 국제공조 강화 .....	13
2. 북한인권법 제정 .....	16
3. 홍보 및 교육을 통한 인권의식 제고 .....	17
IV. 인권우선 접근 .....	19
V. 단계별 접근 .....	21
1. 북한 취약계층별 상황 평가 및 지원 종합계획 수립 .....	21
2. 농업협력 사업의 강화 .....	22
3. 남북한 인권기술협력 추진 .....	23
VI. 결론 .....	26



## 요 약

본 연구는 2014년 북한인권 문제가 국제사회의 주요 의제로 부상하게 된 상황을 계기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과 공감대를 바탕으로 하였다. 현재 국제사회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자유권을 중심으로 한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주창(advocacy)과 사회권을 중심으로 한 인권 개선을 유도하려는 관여(engagement)의 상호보완적 접근(two-track approach)을 채택하고 있다. 두 접근 모두 현재의 북한인권 상황을 고려했을 때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정책 수립 및 실행의 차원에서 이를 균형적·병행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전략적 사고의 계발이다.

북한인권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전략으로는 국제협력과 남북관계 발전 조화, 실행가능한 인권정책, 인권우선 접근, 단계별 접근이 있는데,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책임성 규명, 역량 강화, 인도적 지원 등 주요 사안을 중심으로 구체적 이행절차를 모색하고 있는 현 국제사회의 움직임을 고려할 때 한국 정부의 관점에서 보다 세부적 실천과제가 도출되어야 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본 연구는 북한인권정책의 각각의 전략과제별로 세부 실천과제를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국제협력과 남북관계 발전 조화의 경우 UN 북한인권사무소 설치 및 활동 지원, 남북한 교류협력 적극 추진, 북한이 수용가능한 인도적 사안 발굴을, 실행가능한 인권정책의 영역에서는 다각적 외교활동을 통한 국제공조 강화, 북한인권법 제정, 홍보 및 교육을 통한 인권의식 제고를 각각 제시하였다. 인권우선 접근의 경우 북한인권영향평가 도입을, 마지막 전략과제인 단

계별 접근의 경우 북한 취약계층별 상황 평가 및 지원 종합계획 수립, 농업협력 사업의 강화, 남북한 인권기술협력 추진을 제시하였다.

이상에서 제시된 세부 실천과제를 중심으로 한국 정부는 주도적이고 전략적 관점에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부응하여 각각의 사안별로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보다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이다.

## I. 서론

통일연구원은 2014년 12월 16일에 개최된 제6차 KINU 통일포럼 결과를 바탕으로 2015년 1월 『북한인권정책 추진전략』을 발간한 바 있다. 이는 북한인권 문제가 국제사회의 주요 의제로 부상하게 된 상황을 계기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과 공감대를 바탕으로 하였다.

북한인권정책의 목표는 북한인권 개선 및 탈북자의 인권보호, 남북간 인도적 사안 등의 근본적 해결을 통해 북한 주민을 포함한 한반도 구성원 개개인의 삶이 보다 행복해지도록 하고, 남북한 사회의 인권친화력을 제고함으로써 ‘행복한 통일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리고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접근은 자유권과 사회권, 압력과 관여의 이분법적 논쟁을 넘어서 균형 있는 통합적 접근이 바람직하다.

한국의 북한인권정책 추진에 있어 국제사회와의 협력은 필수적이다. 따라서 북한인권에 대한 인식, 정책수단, 정책목표 등에 있어 국제사회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특히 국제사회의 인권동향 및 인권정책과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또한 모든 대북정책과 마찬가지로 북한인권정책 역시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선 국내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나아가 북한의 수용가능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북한인권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전략으로는 국제협력과 남북관계 발전 조화, 실행가능한 인권정책, 인권우선 접근, 단계별 접근이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과 남북관계 발전은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실제 대북, 대외, 대내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인권적 고려들이 모든 북한 관

런 활동에서 효율적으로 투영되어야 하며, 또한 단계별로 진행되는 것이 현실적이다.

이와 같이 『북한인권정책 추진전략』이 북한인권정책의 기초, 원칙, 전략과제를 중심으로 북한인권정책이 대북·통일정책에 투영될 수 있는 기본 틀을 제시했다면, 본 보고서는 북한인권정책의 실행력을 제고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보고서는 『북한인권정책 추진전략』에서 제시된 전략과제를 더 세분화·구체화·정교화시키는 데 연구의 초점을 맞추었다.

〈표 1〉 북한인권정책의 기초, 원칙, 전략과제

구분	내용	
기초	균형 있는 통합적 접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유권과 사회권의 상호 보완강화</li> <li>■ 압력(책임성 규명, 비난 및 개선 촉구 등)과 관여(역량강화, 지원 등)의 병행</li> </ul>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사회와의 협력</li> <li>■ 국내적 공감대 확산</li> <li>■ 수용가능한 인권정책</li> </ul>	
전략과제	국제협력과 남북관계 발전 조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N 북한인권사무소 설치 및 활동 지원</li> <li>■ 남북한 교류협력 적극 추진</li> <li>■ 북한이 수용가능한 인도적 사안 발굴</li> </ul>
	실행가능한 인권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각적 외교활동을 통한 국제공조 강화</li> <li>■ 북한인권법 제정</li> <li>■ 홍보 및 교육을 통한 인권의식 제고</li> </ul>
	인권우선 접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인권영향평가 도입</li> </ul>
	단계별 접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 취약계층별 상황 평가 및 지원 종합계획 수립</li> <li>■ 농업협력 사업의 강화</li> <li>■ 남북한 인권기술협력 추진</li> </ul>

## II. 국제협력과 남북관계 발전 조화

남북관계라는 양자적 차원에서 효율적인 북한인권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논의동향을 긴밀히 파악하고, 이를 한반도의 현실에 알맞은 방식으로 전환·적용시키는 과정이 필연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

북한인권 문제 제기에 대한 북한 당국의 반응을 고려했을 때,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남북대화, 상호교류, 당국 간 합의 등과 병행하여 추진하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협력은 북한 당국의 비협조 내지 무시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현재, 한국 내 설치된 UN 북한인권사무소에 대한 북한의 반응이 하나의 예가 될 것이다. 나아가, 북한 내 인권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한국 정부와 북한 당국이 대화를 거부함으로써 남북관계 발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한국의 국제협력 증진노력이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의 균형적 시각으로 평가하고, 긍정적 요소를 극대화시키고 부정적 요소를 극소화시키는 세부 실행방안의 계발이 요청된다. 한국은 국제협력과 남북관계의 선순환적 관계를 지향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 방식으로 세부 실천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1. UN 북한인권사무소 설치 및 활동 지원

UN 인권이사회는 2014년 3월 28일 채택한 북한인권결의에서 UN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이하 “OHCHR”)에 대하여 북한인권 상황과 관련하여 현장에 기반한 조직(a field-based structure) 설립 등을 통하

여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따르고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요청하였다. 2014년 5월 30일 UN OHCHR 은 한국에 UN 북한인권사무소를 설치하기로 공식발표하였고, 2015년 6월 23일 UN 북한인권사무소가 서울에 개설되었다. UN 북한인권사무소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이하 “COI”)와 같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므로 지속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UN 북한인권사무소 한국 설치에 한국이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이자, 남북관계 개선의 측면에서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북한은 서울에 북한인권사무소가 개소된 23일과 25일, 27일 세 차례에 걸쳐 각각 외무성 대변인 담화,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 노동신문을 통해 남한에 대한 ‘초강경 대응’을 언급하였다. 이와 같이 북한이 UN 북한인권사무소 한국 설치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피력하고 있어 한국 정부로서는 보다 신중하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UN 북한인권사무소 설치를 계기로 진행되고 있는 한국의 역할에 관한 논의는 국제협력과 남북관계 개선을 함께 도모해야 할 한국 정부의 고민을 압축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UN COI 보고서 발간 이후,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국제사회는 그동안 산발적으로 제기되던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을 COI라는 종합적 틀을 통해 접근함으로써 북한인권 침해현황이 ‘인도에 반한 죄(crimes against humanity)’에 해당된다고 결론지었다. 둘째, 위의 사안과 관련하여, 북한 내 인권침해 가해자 처벌을 위해 해당 개인에 대한 국제형사법적 처벌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에 집중함과 동시에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책임성(accountability) 규명’이라는 정책목표를 제시하였다.

UN 북한인권사무소는 이러한 UN COI의 활동에 대한 후속조치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특히, UN 북한인권사무소가 한국에 설치되게 된 배경에는 한국이 가진 북한에 대한 지리적 인접성과 북한인권 자료 접근의 용이성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UN 북한인권사무소가 UN OHCHR과의 긴밀한 연계 속에 COI 권고사항의 구체적 이행을 위해 북한과의 기술협력, 상호대화 등을 추진함과 동시에 ‘책임성 규명’이라는 또 다른 정책적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고 했을 때, 한국 정부에게 정치적 부담이 존재한다. 즉, 북한이 COI 활동은 차치하고, COI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한국이 COI 후속조치로서의 UN 북한인권사무소 설립을 수용한 것 자체가 남북관계 측면에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압박과 관여라는 두 가지 정책목표에도 불구하고, ‘책임성 규명’이라는 차원에서 압박에 더 큰 무게가 실리게 될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UN 북한인권사무소는 장소만 한국 정부의 협조를 받았을 뿐, 내부적 활동은 UN OHCHR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영향력은 최소화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설치된 UN 북한인권사무소로 인해 남북관계 속에서 한국이 가지게 될 정치적 부담은 향후 지속될 것이다. 따라서 UN 북한인권사무소의 설치와 활동을 계기로 한국 정부는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북한인권정책을 국제협력과 남북관계 조화의 관점에서 수립해 나가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UN 북한인권사무소 설치와 관련하여 한국 내 공감대 형성의 전기를 마련할 필요성도 존재한다. 북한인권 관련하여 보수와 진보의 이분법으로 나누어져 있는 국내 북한인권 논의실태를 감안

하여 한국에 설치될 UN 북한인권사무소가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북한인권 개선에 대한 국민적 관심 환기, 인권개선을 위한 지역협의체로의 발전 가능성 등 다양한 사안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정부는 UN 북한인권사무소 설치를 전후로 UN과의 협력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견지하되, 특히 관련 정부부처 및 시민사회 간 긴밀한 공조를 중심으로 북한인권사무소의 역할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 2. 남북한 교류협력 적극 추진

UN COI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서 남북한 대화 및 교류협력을 권고하였다. 남북 주민들에 대해서는 남북한 화해의제를 위한 단계별 남북대화를 활성화할 것을 권고하면서, 친선 스포츠 경기, 학술·재계 교류, 북한 청년들을 위한 장학 및 직업 실습 사업, 학생 간 교류, 적십자 등 시민단체 간의 교류, 전문가 및 여성단체 등의 교류, “자매도시” 관계 수립, 궁극적으로 교통 및 통신망 재건 등을 통해 남북대화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하였다. 남북한 정부 및 시민단체들에 대해서는 북한 주민들이 정보를 교환하고 해외경험을 접할 수 있도록 문화, 과학, 스포츠, 굿거버넌스(good governance), 경제 개발 등의 분야에서 인적 대화 및 교류기회를 확대할 것을 권고하였다. 북한이 남한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민간단체를 통한 간접적인 지원도 거부하는 등 현재의 남북관계를 풀어나가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와 국민은 COI가 권고한 바와 같이 남북한 대화 및 교류협력을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 분단으로 인한 한민족 전체의 고통을 경감시키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COI의 이러한 권고사항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전략 중 관여정책에 해당된다. 즉, 남북한이 공동의 유대감을 극대화하고,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는 전략으로서 대화를 통한 교류를 회복하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정부 당국 간 접촉뿐만 아니라 민간을 위시한 시민사회 간 다양한 층위의 교류 및 접촉이 요청된다. 문제는 현재와 같이 남북관계가 경색되었을 때, 남북 간 교류 및 접촉과 같은 COI 권고사항을 어떻게 실행에 옮기느냐일 것이다. 하나의 방안은 현재 진행 중인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선 노력 중 남북관계 개선과 관련된 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선제적으로 제안하는 것이다. 앞서 언급된 UN 북한인권사무소 개설과 같은 모멘텀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구체적 실행방안의 하나가 될 수 있다. 압박 혹은 관여라는 이분법에서 벗어나 국제사회가 권고하는 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남북관계 개선의 측면에서 재해석해 내는 노력 또한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정부 관계자·시민사회의 적극적 민관협력 및 정책협력이 필요하다. 한국 내 북한인권 관련 긴밀한 소통과 협력구도 구축을 통해 국제사회에 대해서도 한국의 역할에 대한 신뢰와 지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COI 보고서는 북한인권 개선방식으로 당국 간 접촉을 넘어 서서 사람 대 사람(people-to-people) 간 접촉과 대화를 강조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와 북한 간 이러한 교류와 협력 과정에서 주요한 매개자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COI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하나가 북한 내 시민사회 역량 강화 및 주민 의식변화를 통한 북한 사회전반의 점진적 개혁이라는 관점에서, 이러한 활발한 교류 및 협력과정을 통해 북한 내부에 보다 유의미한 정보가 유입되고 북한 주민들이 외부세계에 보다 노출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것이다.

국제사회의 역할과 관련하여 COI 보고서는 다양한 권고사항을 제

시하고 있는데, 이 중 남북관계와 관련하여 북한 내 인권상황 내지 남북관계의 현황과는 상관없이 인도적 지원(humanitarian assistance)의 중요성이 언급되고 있다. 이는 인도주의 정신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서 인도적 지원이 경제적 혹은 정치적 압박의 수단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인도적 지원은 한 사회 내 가장 취약한 계층에 대한 구호를 목적으로 시급하고 중요한 목표대상을 설정하고 전략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인도적 지원은 공평성(impartiality), 중립성(neutrality), 독립성(independence) 등의 원칙을 견지해야 하며, 접근이나 모니터링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단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 3. 북한이 수용가능한 인도적 사안 발굴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협력과 남북관계 발전이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결국 북한 당국 뿐 아니라 북한 주민들의 인권의식 신장과 인권 개선을 위한 주도적 역할이 요청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북한의 수용가능성 증대라는 북한인권정책 추진전략의 주요 원칙이 세부 실행방안에서도 투영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위하여 북한이 보편적 정례인권검토(이하 “UPR”)에서 받아들인 권고사항을 중심으로 한국 정부가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법을 통한 대화채널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이러한 대화채널 구축을 위해 북한이 현실적으로 수용가능한 인도적 사안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내야 한다. UPR의 권고사항을 중심으로 북한 당국과 대화하는 것은 북한이 UPR에 대해 기본적인 수용의 자세를 보이고 있으며, UPR 과정에서 북한이 수용한 권고사항에 대한 언급을 통해 국제

사회와 북한 간 그리고 남북 간 접촉의 기회가 증대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북한은 지난 2009년 진행된 제1차 UPR에서 총 167개의 권고안 중 81개의 권고안을 최종 수용하였다. 또한, 북한은 2014년 진행된 제2차 UPR에서 총 268개의 권고안 중 117개의 권고안을 최종 수용하였다(부분수용 포함). 제1차와 2차 UPR에서 드러난 바, 북한은 인권영역에서 국제사회와의 협력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북한 내 산모·영유아·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 분야의 인권영역에서 일부 개선노력을 나타내었다. UPR 권고사항에서 제시된 새로운 국제인권조약의 가입, 아동·여성·장애인 등 취약계층 관련 법률 강화 및 집행, UN 인권메커니즘과의 협력, 인도적 지원 투명성 확보, 세계식량기구 등 국제기구와의 협조관계 강화, 양성평등 권리 강화, 사법부 독립성 강화, 농촌 개발, 공민위생보건 서비스 강화, 교육의 질 제고, 장애아 교육권 보장 등에서도 수용의사를 표명하였다. 국제사회와 한국 정부는 이렇게 북한이 수용한 권고안을 중심으로 창의적이고 선제적 방식으로 북한 당국과 대화를 추구할 필요성이 있다.

한국은 현 정부 출범 이후 북한 내 취약계층 구호를 위해 특히, ‘모자보건 1000일 패키지’ 사업을 제안한 바 있다. 물론, 초기 구상과는 별개로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이러한 정부의 사업은 여러 제약을 경험하게 되었다. 따라서 북한이 대화에 응할 수 있는 작은 영역부터 조금씩 협상의 영역을 확대해 나가는 전략이 요청된다. 산모와 영유아에게 가장 중요한 1,000일의 기간 중 필수적인 의약품과 의료시설 등 제반환경 확보를 통해 통일 이후 통합과정까지 고려하는 한국 정부의 의지가 전달될 수 있을 것이다. ‘모자보건 1,000일 패키지’를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국제기구를 통해 지속되어 온 지원을 더

확대하고, 남북 양자 간 차원에서 사업 관련하여 지원할 수 있는 품목을 선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제안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관련 시민단체들과의 긴밀한 협조와 의사소통이 요청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민간 차원의 지원을 좀 더 허용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인도적 원칙의 확립 속에 구체적인 사안별로 남북 간 대화 및 협상이 어느 정도 진전되면, 한국 정부는 쌀이나 비료 등 보다 직접적으로 북한을 지원할 수 있는 안건을 단계별로 제시할 수 있다. 현재 북한은 남북관계 경색 속에서 한국의 지원을 전면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북한이 수용할 수밖에 없는 미시적이고 구체적인 사안들을 전략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 결국,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 개선의 영역에서 국제사회와의 협력과 남북관계 발전 및 조화를 선순환적 구도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북한이 국제사회의 인권개선 노력에 반응한 사안을 중심으로 구체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을 통하여 북한의 반응을 지속적으로 유도해야 할 것이다.

### III. 실행가능한 인권정책

한국의 북한인권정책은 실행가능성을 감안하면서 추진되어야 한다. 즉, 북한인권 개선이라는 정책목표가 단순히 선언적 차원을 넘어서서 실제 대북, 대외, 대내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담론으로서 인권은 매우 광범위한 권리들을 포괄하는 것이지만, 정책 추진과정에서 인권은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이 요구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하에서는 우선적으로 실행 가능한 북한인권 개선 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 1. 다각적 외교활동을 통한 국제공조 강화

2014년은 UN 인권이사회와 UN 총회에서 UN COI의 조사 내용이 반영된 강도 높은 결의안이 채택되고 북한인권 문제가 UN 안전보장이사회 의제로 채택되는 등 UN의 북한인권 접근방식에서의 질적인 변화가 나타난 해였다.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을 고려할 때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UN 차원의 실질적 조치로 이어지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만으로도 북한에게는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한국 내에서는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고 북한인권 문제의 중요성을 부각시킨 계기가 마련되기도 하였다.

한국 정부로서는 국제공조에 기반해 북한을 설득하고 압박하는 것이 실리와 명분을 모두 챙길 수 있는 방안이므로, 국제사회와의 공조 노력을 보다 더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의 시선이 부정적으로 결집되고 있지만, 여전히

국제공조를 통한 북한인권 개선 노력에 동참하지 않고 있는 다수의 국가들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2014년 12월 18일 UN 총회에서 116개 국가가 찬성투표를 함으로써 북한인권결의가 채택되기는 하였지만, 이러한 결의 채택에 20개 국가가 반대표를 행사하였고, 53개 국가가 기권표를 행사하였다. 2012년과 2013년에 북한인권결의가 무투표로 채택되었던 것과는 대비되는 모습이다.

반대표와 기권표를 행사한 국가들에 대하여 북한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그 해결을 위한 국제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다수의 아프리카 및 중남미 국가들이 반대표와 기권표를 행사하였고, 동남아시아 및 중동 국가들 중에도 반대표와 기권표를 행사한 국가들이 적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특히 이러한 지역에서의 외교활동에 있어서는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과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반대표와 기권표를 행사한 국가들 대부분이 인권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은 국가들이므로 북한인권 문제의 차별성을 부각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설득작업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각각의 국가가 그러한 입장을 취한 배경과 이유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반대국과 기권국의 입장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나, 특히 기권국의 경우에는 가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등 보다 다양한 접근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기권국 중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과 같이 북한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아시아지역 국가들은 특히 주목할 만하다.

〈표 2〉 2014년 UN 총회 북한인권결의 반대국 및 기권국

	아프리카 지역	아메리카 지역	아시아태평양 지역	유럽 및 중앙아시아 지역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
<b>반대국 (20개국)</b>	· 수단 · 감비아 · 짐바브웨	· 베네수엘라 · 볼리비아 · 에콰도르 · 쿠바	· 북한 · 중국 · 라오스 · 미얀마 · 베트남 · 스리랑카	· 벨라루스 · 러시아 · 우즈베키스탄	· 이집트 · 시리아 · 오만 · 이란
<b>기권국 (53개국)</b>	· 앙골라 · 카메룬 · 코모로 · 콩고 · 콩고민주공화국 · 에리트레아 · 에디오피아 · 가봉 · 기니 · 케냐 · 레소토 · 말리 · 모잠비크 · 나미비아 · 니제르 · 나이지리아 · 세네갈 · 남아프리카공화국 · 토고 · 우간다 · 탄자니아 · 예멘 · 잠비아	· 가이아나 · 니카라과 · 도미니카공화국 ·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 세인트키츠네비스 · 세인트루시아 · 수리남 · 앤티가바부다 · 트리니다드토바고	· 말레이시아 · 싱가포르 · 브루네이다루살람 · 인도네시아 · 캄보디아 · 네팔 · 방글라데시 · 인도 · 파키스탄 · 솔로몬제도 · 통가 · 피지	· 키르기스스탄 · 타지키스탄 · 투르크메니스탄	· 사우디아라비아 · 카타르 · 쿠웨이트 · 리비아 · 모리타니 · 알제리

※ 뭉골은 표결 불참

한편, 북한 해외파견 근로자의 인권 문제, 외국인 납치 문제, 탈북 여성의 매매혼 내지 인신매매 문제와 같이 해외에서 발생하는 북한 당국에 의한 인권침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것도 북한인권 문제를 부각시키고 협력을 이끌어 내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상기 반대국 및 기권국에는 북한 근로자들이 파견되어 일하고 있는 국가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북한 해외파견 근로자 현황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상기 반대국 및 기권국 중에서는 중국, 러시아, 미얀마, 오만, 알제리, 앙골라, 쿠웨이트, 리비아, 말레이시아, 나이지리아, 카타르 등에 북한 파견 근로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2. 북한인권법 제정

2014년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과 더불어 국내에서는 북한인권법 제정 논의가 재개되었다. 특히, 여당과 야당은 제19대 국회에서 논의 중이던 10개의 법안을 각각 통합 여당안(‘북한인권법안’, 김영우 의원 대표발의)과 통합 야당안(‘북한인권증진법안’, 심재권 의원 대표발의)의 두 개 법안으로 모으는 데 성공하였다. 통합 여당안인 ‘북한인권법안’의 경우, 북한 주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시민사회 및 국제사회와 체계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구축함으로써 북한인권 상황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제안이유로 제시하였다. 법안에서는 북한인권자문위원회, 북한인권기본계획 및 집행계획, 인도적 지원, 북한인권을 위한 국제적 협력, 북한인권재단의 설립·운영·구성, 북한인권기록보존소,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교육·홍보, 남북교류·협력의 강화 등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통합 야당안인 ‘북한인권증진법안’의 경우, 남북대화와 인

도적 지원을 통해 북한 주민의 인권을 증진시키는 것을 제안이유로 제시하였다. 법안에서는 남북인권대화의 추진, 인권대화자문위원회, 인도적지원협의회, 인도적지원사무소의 설치, 인권정보센터의 설치 등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여당이 주장하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 북한인권재단과 야당이 주장하는 인도적지원협의회, 인권정보센터 등이 주요 쟁점이다.

현재 논의 중인 북한인권법 제정은 한국 사회 내 북한인권 개선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가장 중요하게는 대북 인권정책의 체계성과 일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정책의 토대’ 내지 ‘제도적 기반’을 보장해 줄 수 있다는 의미를 지닌다. 북한인권법 제정을 통하여 대북 인권정책의 제도적 기반이 확립되면 남북관계의 부침이나 정권의 교체에 영향을 덜 받게 됨으로써 한국의 대북 인권정책이라는 관점에서 지속적인 정책 아젠다와 자원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인권정책의 여러 원칙 중 특히 일관성과 효율성의 확보라는 관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여당안과 야당안이 모두 제안이유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북한인권법의 제정 목적은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고 증진하는 데 있다. 따라서 양측이 의견을 조율하는데 있어서 그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진정성 있는 고민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 3. 홍보 및 교육을 통한 인권의식 제고

북한인권 문제가 UN 안전보장이사회 의제로 채택되고 서울에 UN 북한인권사무소가 설립되는 등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는 데 비해 국내적으로는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이 저조한 편이다. 이에 북한인권 문제를 포함하여 한국 사회 전체적으로 인권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남북한 주민이 모두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와 관련하여 공통의 인식을 가지게 된다면 통일 후 사회통합에도 기여할 것임은 물론 통일 전 통일의 여건과 기반 조성에도 기여할 것이다.

먼저 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보고서와 UN COI 보고서에서 현재의 북한인권 상황이 객관적으로 조사되고 평가되었기 때문에 이 결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북한의 다양한 인권 침해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COI 보고서의 경우 그 주요 조사결과만이라도 학생, 군인,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서 기본자료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 또한, 바람직한 통일은 사회통합이며 진정한 사회통합은 각종 차별의 철폐에 있으므로 북한의 현 인권상황과 인권환경은 통일교육에서도 적극 활용되어야 한다. 나아가 북한인권 문제가 향후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점을 고려, 이 분야를 담당할 수 있는 전문가와 인력을 양성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될 필요가 있다.

## IV. 인권우선 접근

UN COI는 UN 사무국과 산하기구들이 공동의 ‘인권 우선(Rights Up Front)’ 전략을 채택하고 이행함으로써 인권적 우려들이 모든 북한 관련 활동에서 효율적으로 고려되고 다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이러한 접근을 우리 내부적으로도 지향하여 대북정책 전반에 인권의 가치를 주류화(Main-streaming)할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대북정책에서 인권의 가치 주류화를 위한 세부 실천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 북한인권영향평가 도입

현재 국내에서는 다양한 영향평가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시행할 때에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하려는 환경영향평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성별 분석영향평가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대북정책 전반에 인권의 가치를 주류화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영향평가들과 유사하게 북한인권영향평가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인권영향평가는 제도·정책·사업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시정을 권고하는 제도이다.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권영향평가를 인권기본조례에 반영하고 인권영향평가를 여러 분야에 적용하는

등의 시도가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인권영향평가가 제대로 시행된 적은 없다. 2003년 정부의 법령과 정책 및 사업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평가하여 시정할 수 있는 인권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된 적이 있으나, 해당 법률안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인권지수와 관련 통계 등 인프라 구축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히는 등 인권영향평가의 도입에 대한 논의가 재개되고 있는 점을 고려, 이러한 기회에 북한인권영향평가의 도입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인권영향평가를 논의하는 데 있어서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 증진의 측면뿐만 아니라 북한의 역량개선 및 제도개선의 측면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V. 단계별 접근

남북관계 차원에서 북한인권정책은 상호 신뢰를 쌓아 나가면서 단계별로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다. 이에 『북한인권정책 추진전략』에서는 1단계로서 남북 간 인도적 사안 해결과 취약계층 지원, 2단계로서 민생 인프라 구축의 본격화, 3단계로서 인권대화와 기술협력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단계별 전략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수렴되어 대북정책의 실효성이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각 단계별 주요 실천과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 1. 북한 취약계층별 상황 평가 및 지원 종합계획 수립

북한은 체제에 위협을 주지 않으면서도 인권 보호 노력을 홍보할 수 있고 국제사회의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취약계층의 권리에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여성 및 아동과 관련하여, 1990년과 2001년에 각각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과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을 비준하였고, 2010년에 이러한 협약들을 이행하기 위한 국내입법으로서 「여성권리보장법」과 「아동권리보장법」을 제정하였다. 2014년에는 「아동의 매매·성매매·아동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하기도 하였다. 장애인과 관련해서는 2003년 「장애인보호법」을 제정하였고 2013년에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서명하였다. 2014년에 실시된 제2차 UPR에서는 여성, 아동,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관련된 권고사항은 거의 대부분 수용하였다. 또한, 2014년 9월에 발간된 조선인권연구협회 보고서에서는 북한에서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집단의 권리가 어떻게 보

장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상당한 분량을 할애하여 구체적으로 소개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남북관계가 어느 정도 호전될 경우 취약계층의 권리 보호를 위한 협력 및 지원에 대해서는 북한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남북한 대화 및 화해의 기반 마련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인도적 지원의 문제와 인권 문제는 구별되는 것이고,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북한의 인권 개선 효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북한 내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수요자를 위한 집행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수행된다면 취약계층의 실질적 권리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추진되고 확대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현 정부는 그동안 일관되게 “영유아, 임산부 등 북한의 취약계층 대상 순수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이러한 원칙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것으로서, 북한의 취약계층별 상황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 작업을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 취약계층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민간 차원의 지원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방안, 북한의 역량 형성 측면을 고려하여 북한 당국의 의지와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 등도 함께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 2. 농업협력 사업의 강화

‘민생 인프라’는 전통적 개념의 인프라인 교통, 통신 분야 등을 포함하여, 북한 주민의 민생과 안정을 위해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비롯한 실질적인 주민 생활의 회복과 안정을 위한 농축산 및 산림 분야의

공동 개발 등을 포괄하게 된다. 이 중에서도 농업 분야 협력 사업은 북한 주민의 생활 향상에 직접적으로 기여함과 동시에 북한 당국의 정책 목표에도 부응한다는 점에서 우선 추진을 고려할 수 있다. 북한은 김정은 집권 이후 지속적으로 농업생산의 증대를 강조하여 왔다. 2013년 신년사에서 농업을 경공업과 함께 ‘주공전선’이라고 강조하였다. 2014년 신년사에서도 ‘사회주의 농촌문제에 관한 테제’ 발표 50돌을 거론하면서 “올해의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농업을 주타격 방향으로 확고히 틀어쥐고 농사에 모든 힘을 총집중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농업 분야 협력 사업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도 북한의 호응 유도를 위한 단계적 추진이 현실적일 것으로 보인다. 비닐하우스 자재 및 경운기를 비롯한 영농기구 지원, 북한 비료 공장의 개보수 지원 등에서 출발하여 점차 시범적 ‘복합농촌단지’ 조성 등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복합농촌단지’ 조성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단순히 농업생산 및 생산성 증대만이 아니라 농촌 생활환경 및 건강상태 개선을 위한 사업을 함께 추진하여 북한 주민들의 건강권 등의 증진으로 이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단순한 물자 지원이 아니라 남한 및 국제사회 관계자들이 북측 파트너들과 함께 일하는 인력 및 기술 교류사업이 되도록 추진하여 인적자본 형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사업 대상 지역은 북한 주민의 외부 접촉 확대를 유도하고 북한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하는 측면에서 북한의 저소득 지역으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3. 남북한 인권기술협력 추진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주요 전략 중 하나로 기술협력(technical

cooperation)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인권 분야에서 기술협력이란 “국제인권기준을 국내법, 정책, 실천관행에 통합시키고 이러한 기준을 실행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국가역량을 구축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북한은 2014년 UN OHCHR과의 기술협력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과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남북한 간에도 인권문제를 공동의 협력과제로 인식하고 남북한 인권기술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북한 인권의 개선은 남북통합 과정에서 남북 간 인권격차가 해소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인권 분야 기술협력은 남북한 통합의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인권 개선을 위한 기술협력의 경우 북한이 의지와 능력을 갖추는 데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그러한 환경을 조성하고 북한을 끌어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북한이 UPR에서 수용한 권고사항을 매개로 협력의 방식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현실적이고도 바람직한 방안일 것이다. 2009년 제1차 UPR과 2014년 제2차 UPR에서 북한이 보여준 태도에 비추어, UPR 제도가 북한 당국으로 하여금 보편적인 인권 개념을 수용하도록 하고 국제사회와 지속적으로 인권 관련 대화를 하도록 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것은 일정 부분 증명이 되었다.

북한이 제2차 UPR에서 수용한 113개의 권고사항 중 남북한인권기술협력과 관련하여 유의미한 것으로는 i) 인권보호의 국제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국내입법, 법령준수 등의 유관분야 강화, ii)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관련 법령 공포 및 인권 관련 법령 프레임 개선, iii) 인권 관련 자료의 발간 및 배포, 인권 훈련 및 교육 등을 통한 인권의식 제고, iv) 사법부문의 독립성 강화, v) 인권침해 행위를 처벌하고 방지하기 위한 조치 마련 등이 있다.

남북한은 모두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당사국이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이 규약의 각 당사국은 현행의 입법조치 또는 기타 조치에 의하여 아직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들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조치 또는 기타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자국의 헌법상의 절차 및 이 규약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제2항).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역시 “이 규약의 각 당사국은 특히 입법조치의 채택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수단에 의하여 이 규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점진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개별적으로 또한 특히 경제적, 기술적인 국제지원과 국제협력을 통하여, 자국의 가용 자원이 허용하는 최대한도까지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제1항). 즉, 남북한은 모두 해당 규약 상 권리의 실현을 위하여 입법조치를 포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국제적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UPR 권고사항의 상당 부분은 이러한 조약의 당사국으로서 조약의 이행과 직결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 북한이 국제인권기준을 국내적으로 충실히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우리의 경험을 공유하는 방향으로 협력의 가능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인권 분야에서의 기술협력에 있어서는 국제기구와의 기술협력보다 남북한 기술협력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입법·사법·행정작용은 기본적으로 국가작용이라는 점, 그리고 언어적인 장벽으로 인하여 이행 상황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파악이 어렵다는 점에서 국제기구 차원에서의 지원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최근 북한이 여러 인권 관련 법령을 제·개정하는 등 국제인권기준을 반영한 입법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므로, 먼저 법 정비 지원의 측면에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다.

## VI. 결론

국제사회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자유권을 중심으로 한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주창(advocacy)과 사회권을 중심으로 한 인권 개선을 유도하려는 관여(engagement)의 상호보완적 접근(two-track approach)을 채택하고 있다. 두 접근 모두 현재의 북한인권 상황을 고려했을 때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정책 수립 및 실행의 차원에서 이를 균형적·병행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전략적 사고의 계발이다.

특히, 효율적 북한인권정책 수립 및 실행을 위해 주요한 원칙에 있어서는 지속성을 견지해야 한다. 한국의 북한인권정책이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 하에 진행되어야 하며, 정책의 국내적 기반인 국민들의 공감대 확산과 부응해야 하고, 나아가 북한 당국이 수용가능한 유연한 전략을 채택해야 한다는 국제적·국내적·양자적 차원의 원칙은 대북인권정책 추진전략 세부 실천과제 논의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 관건은 실제 정책환경 속에서 이러한 원칙을 효율적이고 구체적으로 투영하는 것이다.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현재 국제사회는 책임성 규명, 역량 강화, 인도적 지원 등 주요 사안을 중심으로 구체적 이행절차를 모색하고 있다. 이상에서 제시된 세부 실천과제를 중심으로 한국 정부는 주도적이고 전략적 관점에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각각의 사안별로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결국, 국제사회와 한국 정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실행가능하고, 인권우선 원칙을 표방하며, 단계별 접근으로 구성되어 있는 북한인권정책 추진전략이 구체적 실행으로 가시화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인권정책 추진전략과 실천과제  
통일나침반 15-03

---

발행처 통일연구원  
발행인 최진욱  
편집인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전화: 02-2023-8000  
팩스: 02-2023-8297  
인쇄처 (주)한디자인코퍼레이션  
전화: 02-2269-9917  
인쇄 2015년 6월  
발행 2015년 6월



# 북한인권정책 추진전략과 실천과제